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1.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99. 11.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 실업대체총괄과장 윤형식)

○ 1999. 8. 6일 공포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의 일치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 개정 :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안 제1조 내지 제12조)

○ 구성인원 조정 : 구성인원을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3. 질의 및 답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부천시노사정위원회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천시 실정에 맞는지?</p>	<p>○ 한노총, 민노총 양쪽 다 참여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민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쪽은 유성기업과 상공회의소입니다.</p>
<p>○ 구성인원을 12인 이내도 가능한데 굳이 15인 이내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p>	<p>○ 상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 15인 이내이면 12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의결년월일	99. 11. 12 (제74회)

제출년월일 : 1999. 11. 2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1999. 8. 6일 공포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의 일치

주요골자

- 조례제명 개정 :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한다
- "위원회"를 "협의회"로 개정(안 제1조 내지 제12조)
- 구성인원 조정 : 구성인원을 "12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안 제3조제1항)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중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위원회 및 중앙노사정위원회"를 "협의회 및 노사정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12인 이내의”를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15인 이내의”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6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8조중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9조 내지 제12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조(목적)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1조(목적)부천지역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기능) 협의회는
4. 위원회 및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4. 협의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5.위원회.....	5.협의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12인 이내의.....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15인 이내의.....
③.....지역경제국장으로 한다.	③.....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위원회는.....특별위원회.....	⑥협의회는.....특별협의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를.....위원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회를.....협의회
제5조(회의) ①.....위원회.....	제5조(회의) ①.....협의회.....
②위원회.....	②협의회.....
③위원회.....	③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위원회.....위원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협의회.....

개정안	수정안
..... <u>위원회</u> <u>협의회</u>
③..... <u>위원회</u>	③..... <u>협의회</u>
제7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 <u>위원회는 위원회</u>	제7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 <u>협의회는 협의회</u>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u>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u>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9조(회의록) <u>위원회는</u>	제9조(회의록) <u>협의회는</u>
제10조(수당 등) <u>위원회와</u>	제10조(수당 등) <u>협의회와</u>
제11조(성실이행의무) 각 경제주체는 <u>위원회</u>	제11조(성실이행의무) 각 경제주체는 <u>협의회</u>
제12조(운영규칙) <u>위원회</u>	제12조(운영규칙) <u>협의회</u>